

제목	국문	의료법인 제도의 활성화 방안			
	영문	A study on improving legal person of medical institutions in korea			
저자 및 소속	국문	박윤형 <sup>1</sup> , 홍순규 <sup>2</sup> , 손명세 <sup>3</sup> , 김계현 <sup>4</sup> 울지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sup>1</sup> ,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료법윤리학과 <sup>2</sup> ,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sup>3</sup> ,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료법윤리학과 <sup>4</sup>			
	영문	YoonHyungPark <sup>1</sup> , SoonKyuHong <sup>2</sup> , MyongSeiSohn <sup>3</sup> , KyeHyunKim <sup>4</sup> Department of preventive medicine and public health, college of medicine Ulji University <sup>1</sup> , Department of medical law and ethics, graduate school of Yonsei University <sup>2</sup> , Department of preventive medicine and public health, college of medicine Yonsei University <sup>3</sup> , Department of medical law and ethics, graduate school of Yonsei University <sup>4</sup>			
분야	보건관리 [의료법]	발표자	박윤형 [일반회원]	발표형식	구연
진행상황	연구완료				
<p>1. 목적</p> <p>최근 10 년간 의료기관의 수는 1.5 배 증가하였는데 이 중 의료법인의 수는 2.4 배 증가함으로써 가장 높은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고, 현재 전체 병원 중 의료법인 병원은 25%에 달하고 있다. 의료법인이 이렇게 증가하는 이유를 몇 가지 살펴보면, 의료인이 아닌 자의 병원설립을 가능하게 하고 과다한 소득세의 압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p> <p>그리고 이러한 의료법인 제도의 활성화로 사회가 얻는 편익도 여러 가지 살펴볼 수 있는데, 먼저 의료법인 제도로 인하여 안정적인 의료공급이 가능하다는 것인데, 일반 의료기관의 경우는 다른 산업의 자본으로 변환될 가능성이 상존 하지만 의료법인은 그 성질상 계속 의료업을 지속할 수 있게 한다. 다음으로는 예산, 사업계획 등에서 관할관청과 공적인 교류를 함으로써 병원운영의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p> <p>이렇게 사적·공적으로 여러 가지 유용성을 지니고 있는 의료법인제도가 우리 나라의 의료법 체계내에서 어떻게 규정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날로 전문화·공동화하는 최근의 의료상황에 얼마나 합리적이고 현실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비판적으로 검토해 본다. 또한 비슷한 영역의 다른 법인체계와의 비교를 통해 그 미비점을 고찰해 보고, 이러한 문제점의 도출을 통해 새로운 모습의 의료법인체를 창출하는 작업을 해 본다.</p> <p>2. 방법</p> <p>먼저, 우리 나라에서 운영되고 있는 전문가법인은 법무법인, 회계법인, 특허법인 등이 있는데, 이들 각 법인의 설립목적, 구성원, 법적 성격 등과의 비교를 통해 의료법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해 본다.</p> <p>그리고, 비교법적으로는 미국에 있어서의 전문가 법인이라고 할 수 있는 Professional Corporation 에 대해서 살펴보고, 우리와 가장 체계가 비슷한 일본의 의료법인에 대한 비교고찰을 함으로써 우리의 의료법인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짚어보기로 한다. 그리하여 현재의 의료법인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 미비점을 보완하는 동시에, 그와는 별도로 새로운 의료법인체의 창설을 모색해 보는 방안을 제시해 본다.</p>					

### 3. 결과

의료법 제 30 조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 중 하나로서 의료법인을 들고 있고, 제 3 장 제 2 절에서는 별도로 4 개의 조항에 걸쳐 의료법인에 관련한 규정들을 두고 있다. 법 제 44 조에 의하면 의료법인에 관하여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고, 시행령 제 18 조에 의하면 의료법인은 의료업을 행함에 있어서 영리를 추구하여서는 안 된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의료법인은 비영리 재단법인의 성격을 띤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업무의 전문화·공동화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일정직역의 전문가(변호사, 회계사, 변리사)들로 구성되는 법인인 법무법인, 회계법인, 특허법인 등의 예를 보면, 각각 상법 상의 합명회사나 유한회사의 적용을 받아 그 업무의 영리성을 인정받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미국에서도 특정 영역에 종사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주주로 참여하는 회사를 두고 있는데, 의료분야에 있어서도 면허를 소지한 의료인이 주주로 참여하여 주식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일본의 의료법인 제도를 살펴보면 일정한 목적을 위한 특정·특별의료법인과 함께 일반의료법인의 형태를 두는 등 그 목적과 요건에 따라서 다양한 의료법인의 종류를 두고 있다. 그리고 그 법적 성격에 있어서도 재단 또는 사단법인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특히 일반의료법인의 경우에는 대부분이 지분이 있는 사단법인의 성격을 띠고 있는 점으로 보아서, 지분을 인정할 수 없는 재단법인으로만 그 성격을 한정하고 있는 우리의 의료법인제도에 비해 그 합리성과 다양성의 측면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것이다.

그리하여 먼저, 의료법에서 불과 4 개의 조항에 그치고 있는 의료법인 규정에 관한 입법적 미비를 보완하여 현재와 같은 재단법인의 성격을 그대로 유지하며 그 공공성과 투명성을 더욱 높여 나가는 작업을 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와 함께, 공동화·전문화하는 최근의 의료환경 하에서 적응력을 높이고 대국민 의료서비스의 제고를 위해 앞서 본 법무법인 등의 경우와 같이 의료인들이 상법상 합명회사의 적용을 받는 새로운 의료법인체를 창설하는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합명회사는 비록 상법의 적용을 받으면서도 자본적 결합 보다는 인적 결합의 색채가 짙은 형태를 택함으로써, 인적 신뢰관계가 있는 구성원의 공동기업 운영에 적합한 회사이기 때문이다.

### 4. 고찰

정부에서는 의원에게 집단개원을 권장하여 국민에게 접근성을 높이는 동시에 의료자원 활용의 효율성을 높이려 하며, 병원에게는 전문과목에 의한 특정 과목별, 특정 집단별 전문화를 추진하여 경쟁력을 높이려는 정책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집단개원과 병원의 전문화는 지금까지 정책목표로만 거론되고 있으며,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수단은 아직 개발 시행되지 않고 있으며, 현재의 운영 체계상 집단개원은 어렵게 되어 있다. 즉 의사들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더라도 그 대표자는 보통 1 인으로 등록되어 수익이 그의 개인소득으로 되어 높은 누진세가 적용되고 추후 수익배당, 재투자 등에서 제도적 장치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무법인이나 회계법인 등과 같이 개인사업을 운영하는 전문가에게 법인화를 추진하게 하여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인 사례와 같이, 의료의 영역에서도 이러한 법인화가 적용된다면 의사들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것을 법적으로 보장 받을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세무·회계 등에서의 투명성과 운영면에서 합리성을 제고시킬 수 있을 것이다.